금지를 위하여 출입금지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- (5) 비, 눈,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6) 재료,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소운반 작업은 근로자로 하여금 달 줄·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해체한 자재는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, 안전한 장소에 적재적 재하여야 한다.
- (8) 해체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분산 적치하여야 한다.

## 5.5 동바리 재설치 작업 준수사항

- (1) 동바리를 해체한 다음 하중이 재하되는 경우에는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,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(3)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,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## 6. 기타 안전작업 준수사항

그 밖의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작업은 「가설공사표준시방서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